

사동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9-637
----------	-------

제출년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사동근린공원(사동 산162번지 일원)은 약7,2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녹지공간으로 시민들의 여가·휴식·체육활동 등 힐링 공간이자 도심 내 거점 녹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 및 2020년 사동공원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으로 약 2만명의 주민이 입주하여 공원조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져 2020. 6. 16.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손실 보상을 시행 중이나, 한정된 시 예산을 공원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 집중 투입이 어려워 더 이상의 손실 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지가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하는 LH의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안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안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안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업무제휴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등)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주요내용

- 제1조(목적) 공공토지비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 규정
- 제2조(비축대상토지) 비축사업 대상 토지의 범위 규정
-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규정
- 제4조(보상업무의 범위) 협약기관별 업무의 범위 규정
 - (안산시)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귀속 협의, 지장물 철거
 - (LH)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 제5조(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
 - 개발사업 관련 원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용 및 부담금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
- 제6조(잔여지의 매입), 제7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
 - 잔여지 매수 및 잔여지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 제8조(공익사업의 변경 등) 공익사업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이행 사항
- 제9조(비축토지의 관리) 비축토지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 공급
- 제10조(비축토지의 공급)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제11조(비축토지의 사용)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함을 원칙
 -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에서 조기 설치 필요시 사용승낙 절차 이행
- 제12조(협조의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간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3조(협약의 해석) 이의 및 견해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에 관한 사항
- 제14조(협약의 발효) 협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

추진경과

- '77. 3. : 공원최초결정
- '20. 2. : 지방재정투자 심사
- '20. 6. : 실시계획 인가
- '23. 8. : 손실보상 협의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손실보상협의 시행
- '24. 3. : 조속재결
- '24. 4. : 토지비축 사업 신청 검토 보고 및 신청
- '24. 5. : 조속재결 일부 실효
- '24. 7. : 실효된 조속재결, 재결신청
- '24. 9. : 토지비축 사업 선정

향후 추진계획

- '24. 12. : 토지비축사업 관련 안산시의회 동의
- '25. 1.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안산시↔LH)
- '25. 6. :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 '27. 12. : 사유지 매입 완료(LH)
- '28. 6. : 공공비축 토지공급(안산시↔LH)
- '30. 6. : 사업완료 및 정산

업무협약서(안) : 【붙임 2】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방침결정문 : 【붙임 4】

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이 경우 토지은행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조사서 및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등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원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③ 원사업시행자는 토지은행이 비축대상 토지에 위치한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해당 지장물을 철거(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축대상 토지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관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원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제5조(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 ① 문화재조사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측량비 등 제2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용 및 부담금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원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토지 등에 대한 이의재결,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6조(잔여지의 매입) ①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및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② 토지은행이 매입한 잔여지는 비축토지 공급시 같이 공급하며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에 포함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제7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 ① 원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또는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은행에 그 손실보상 또는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은행은 원사업시행자와 그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② 토지은행이 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은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에 포함한다.

제8조(공익사업의 변경 등) ① 원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 등의 경우 이를 즉시 토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에 통지할 때 해당 공익사업에서 제외 또는 추가되는 토지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당해 사업지구 토지의 세목을 관보 또는 공보에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은행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세목 및 원사업시행자의 보상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은행은 원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 중 해당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은행이 제2항에 따른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환매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에 포함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⑥ 토지은행이 비축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고시문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시행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비축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원형지 상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비축토지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원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과 같이 보상 전부터 원사업시행자가 관리해온 토지는 토지은행이 비축한 후에도 원사업시행자가 계속 관리한다.

제10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비축토지의 공급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이하 “공급가격 산정방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원사업시행자와 토지은행 간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공급 가격 산정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균등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사업시행자가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계약서의 납부약정일까지 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토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판매담당부서장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비축토지의 사용) ① 비축토지의 사용은 토지은행과 원사업시행자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한하며, 원사업시행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설치를 위하여 토지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은행에 사용승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은행은 원사업시행자로부터 제2항의 사용승낙을 요청받은 경우 대상토지·공급시기·공급조건 등이 포함된 별도의 공급계약을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후에 사용승낙하기로 한다.

제12조(협조의무) 원사업시행자와 토지은행은 제2조의 비축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14조(협약의 발효) 이 협약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음을 토지은행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양측 대표가 협약서에 직인을 날인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내용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에 양측 대표가 직인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